

# 행 정 자 치 부

## 훈계·주의 요구

제 목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·전출 제한기간 위반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김해시

관 련 자 ① 김해시 ○○동사무소(전 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(전 지방○○○○○)  
○○○

② 김해시 ○○동사무소(전 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(전 지방○○○○○)  
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1. 1.부터 2015. 6. 2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2. 22.부터 2016. 7. 17.까지 인사업무 관련 각각 실무책임자,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.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

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러나 정부합동감사기간(2016. 11. 14.~11. 30) 동안 김해시 공무원의 임

용·발령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개경쟁채용,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임용한 공무원의 전보·전출 제한기한을 위반하여 인사를 단행하였다.

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임용한 공무원은 3년 이내에는 김해시 소속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[붙임]과 같이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 등 3명을 타 자치단체로 전출을 명령하였고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 등 2명은 최초 임용 후 전보제한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함으로서 인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.

또한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6조의2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은 기구의 개편, 직제의 개정·폐지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할 수 없으나 지방○○○ ‘○’급 ○○○은 최초 임용직위에서 1년 4개월 후 다른 직위로 전보함으로서 계약직 채용의 목적에 위반하여 인력을 운영하였다.

## 조치할 사항            김해시장은

[훈계]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향후 인사발령 시 공채 또는 경채를 통한 신규 임용공무원의 전보·전출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준수하시고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발령은 채용 당시 업무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력운영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김해시 전부·전출 제한기간 위반현황

가.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 공무원의 타 기관 전출제한 기간(3년) 위반 현황

소 속	직급	성명	채용일자	전출일자	전출기관	비 고
김해시 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	지방○○○○○	○○○	2012.2.13	2014.10.1	○○남도 ○○시	
김해시 ○○○ ○○○○센터	지방○○○○○ ○○	○○○	2010.2.24	2011.6.13	○○광역시 ○구	
김해시 ○○○사업소 ○○○○관	지방○○○○○	○○○	2010.2.24	2012.4.23	○○남도 ○○시	

나. 경력경쟁을 통한 신규자의 전보제한 기간(3년) 위반 현황

소 속	직급	성명	채용일자	전보일자	전보부서	비 고
경상남도 ○○시 ○○면	지방○○○○○	○○○	2014.9.1	2014.11.10	○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	
경상남도 ○○시 ○○동	지방○○○○○	○○○	2013.6.10	2014.5.1	○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	

다. 임기제 공무원의 전보제한 위반 현황

소 속	직급	성명	채용일자	전보일자	전보부서	비 고
○○시 ○○과	지방○○○(○○ ○급)	○○○	2010.7.8	2011.11.22	○○○사업소 ○○○○○	